

『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4월 29일

나. 발 의 자 : 윤서규의원외 7인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5월 20일

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서면(생략)

나. 제안이유

-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변경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함

다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등)

-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『간사』의 호칭을 『부위원장』으로 변경 (안 제53조·제65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구미시의회 회의규칙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본 개정 규칙안은 「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등을 정비하는 개정 규칙안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